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68
----------	------

2020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외 15명
- 나. 발 의 일 : 2021년 4월 1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 라. 상 정 일 :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현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1. 4. 9.~4. 1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1조)에서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 및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의2는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 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납세담보 금액의 5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 납세담보 감면 신청과 결과 통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칙으로 마련 하도록 규정(제2항)하며,
 - 지방세 체납 또는 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담보 감면을 중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제3항) 등
 -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납세담보금액 감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p> <p>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p>

현행	개정안
	<p><u>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u></p>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납세의무자”)로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발생하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 납부기한(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에 의거 미납 세액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도임.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

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설 2016. 12. 27.>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 2014. 8.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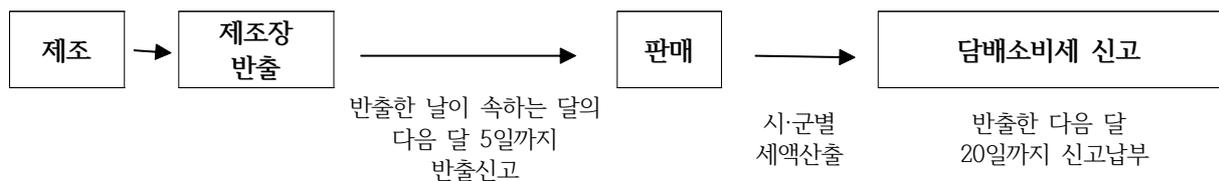
-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1조(납세 담보) ① ~②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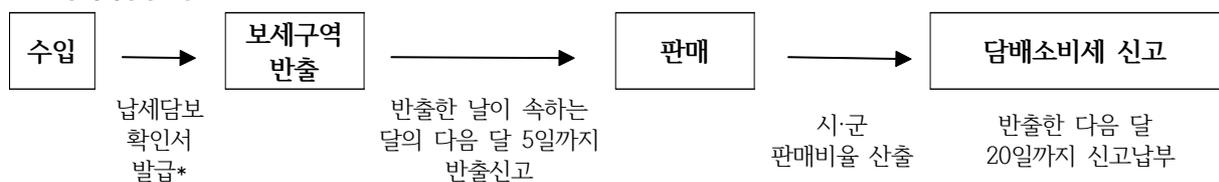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담배소비세 징수 관련 진행 절차」

○ 제조담배



○ 수입담배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지방세법 제64조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서는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기 납부세액 차감) 이상으로 납세담보액 규모를 정하고 있고,
 - 납세담보금액 감면 요건을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략)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 수입판매업자에 한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면(50%)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려는 것으로,
 - 현재 담배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침(2006.5.26.)에 근거하여 이미 납세담보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납세담보 금액에 대한 감면 규정을 설치할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업무처리 요령 통보」(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138(2006.05.26.)) 중

Ⅲ. 납세담보제공 요구 제외대상 (① 또는 ②)

- ①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 A+이상 평가를 받은 자

- 한편, 담배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납세담보제공 요구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담보금액 감면이나 별다른 보완 없이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해오고 있는바,
 - 이는 동일한 납세담보제공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 중 담배 수입판매자에게만 납세담보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실정임.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제71조제3항 신설, 2014. 8.12.)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 외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납세 담보) ① (생략)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납세담보 및 납세담보면제 관련 입법연혁 >

시행일	개정사항	주요내용
1989.1.1.	납세담보규정 신설(지방세법)	제조사,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관할 지자체장이 담보요구가 가능
1995.1.1	수입판매업자 '통관시 납세담보확인서	수입판매업자는 세관장에게 납세담

	제출 ' 규정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보 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
2006.05.26	“납세담보업무처리요령” 지침 시달 (행정자치부)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제조, 수입 판매업자 납세담보요구 제외가능 (지침 이후 제조자 납세담보제공 제외)
2014.8.12	조례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정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2006년 지침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 정(임의규정)
2016.12.27	수입판매업자 ‘통관 전 사전신고납부’ 규정 신설	수입판매업자가 통관 전에 담배소비세 신고납부할 경우 납세담보제공 제외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납세담보 금액의 50%만 감면 적용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먼저,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제조업에 대한 시장 진입 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과 규모 있는 제조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 제조 담배의 반출 후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등 채권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궤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담배 제조자의 서울시 담배소비세 납부 현황

연번	회사명	주사무소	제조장
1	KT&G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	브리티쉬아메리칸 타바코코리아 제조(주)	사천시	사천시
3	한국필립모리스(주)	서울특별시	양산시

※ 서울시 3개 담배 제조업체 담배소비세 납부현황 : '20년 5,469억원
⇒ '20년 서울시 담배소비세 전체 징수액 6,060억원의 약 90.3% 점유

- 담배 수입판매업에 대하여는 제조업에 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 자산 규모 등 재산상 필요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바,

「담배사업법」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이하 생략)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생략)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략)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담배제조업에 비해 체납 발생 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담배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의 50%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담배소비세 제조시설을 갖춘 담배제조업체와 달리 담배수입업체(서울시 등록 230개, 실제 수입업체 31개)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체납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불투명

○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납세담보금액 감면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되고 있는 담배제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바,

< 서울시 납세의무자 분류별 담배소비세 세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합계	605,200 (100.0)	565,435 (100.0)	607,910 (100.0)
제조업자	546,925 (90.4)	512,126 (90.6)	490,776 (80.7)
수입판매업자 등	59,064 (9.6)	53,308 (9.4)	117,134 (19.3)

담배 수입업체 납세담보 규모 : 5개 업체 901억 7천만원 ('20. 9월 기준)

- ①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 900억원 (도이치은행 지급보증서)
- ② 로스만스파이스트비비 : 1억원 (홍콩상하이은행 지급보증서)
- ③ 한국필립모리스 : 5천 2백만원 (씨티은행 지급보증서)
- ④ 피에르 : 1천 7백만원 (하나은행 지급보증서)
- 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 1천만원 (홍콩상하이은행 지급보증서)

※ 담배소비세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의 1,000억원 지급보증에 대한 담배수입업체의 연간 금융비용은 2.5억원 수준(수입 시기/물량에 따라 납세담보 보증서 발급 수시 변경).

※ '20년 한해 동안 수입담배에 대하여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가 전국에 납부한 담배소비세는 전국 3,043억 원(서울 537억원*, 타시도 2,506억원)

* 수입판매업사에 대한 서울시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90.9% 차지)

- 담배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차별성 해소 방안 마련과 더불어 담배소비세를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지방세법 제64조제4항).

○ 한편, 안 제7조의2제2항은 납세담보 감면 제도 운영에 관련한 필요 서식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지방세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모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입법 틀에 맞추어 서식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따라서 재무국은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감안하여 서식 마련 등 적기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이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 개정 소요 기간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며,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납세담보감면 적용 대상을, 담배 수입판매자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맞추어, 조례 시행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세 관련 법령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3. (생략)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6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1일

발 의 자 : 이현찬, 경만선, 김소양,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희걸, 이상훈,
이세열, 이영실, 임종국,
채유미, 최기찬, 최정순,
한기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u></p>